Law Dataset Report

Train Dataset

Preview

| class | text |
|-------|---|
| i | 2) 또한 자동차 열쇠에 대한 배타적인 점유를 취득하는 이상 인근에 주차된 해당 자동차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매우 용이하고, |
| w |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 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, |
| u |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보면 |
| С | 나.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. |
| d |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며 부엌에 있던 식칼을 꺼내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식칼로 찔렀는데, |
| i |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찔린 것일 뿐, |
| d | 고개를 숙이자 다시 등 부위를 한번 더 찔렀다고 진술하였고 |
| i | 이 사건 음료수 병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|
| i | 사고(명품) 장애가 없고, |
| i | 그리고 결국 피해자는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였다. |

Description

| class | text |
|-------|-------|
| 4078 | 4078 |
| 8 | 3832 |
| d | 살피건대, |
| 1360 | 11 |

Info

| Non-Null Count | Null Count | Dtype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4078 | 0 | category |
| 4078 | 0 | object |

Validation Dataset

Preview

| class | text |
|-------|--|
| i |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위험한 수준이었고, |
| С |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. |
| е | 이러한 손상은 둔기에 의해 발생 가능한 손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, |
| С | 피고인 A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, |
| С |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 하므로, |
| i | 피고인은 누군가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는데, |
| d | 2) 이후 피고인은 C에게 수시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욕설을 하였고, |
| i |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|
| d | 피해자의 코에 귀를 대보니 피해자가 숨을 안 쉬는 것을확인하고 피해자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목 조르기를 멈춘 후, 112 로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. |

Description

| class | text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
| 1935 | 1935 | |
| 8 | 1852 | |
| d |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 | |
| 687 | 6 | |

Info

| Non-Null Count | Null Count | Dtype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1935 | 0 | category |
| 1935 | 0 | object |

Test Dataset

Preview

| class | text |
|-------|--|
| u |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, |
| u |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, |
| u | 앞서 살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, |
| u | 피고인과 변호인은, |
| d | (증거기록 제178쪽). |
| u | 먼저, 피고인이 면도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방향에서 목 방향으로 그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, |
| d | F은 당시 현장에 없었다"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, |
| i | 그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칼날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면 경동맥이 손상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다. |
| i | 위 칼로 옆구리나 등을 찌를 경우 사망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, |
| е |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, |

Descrip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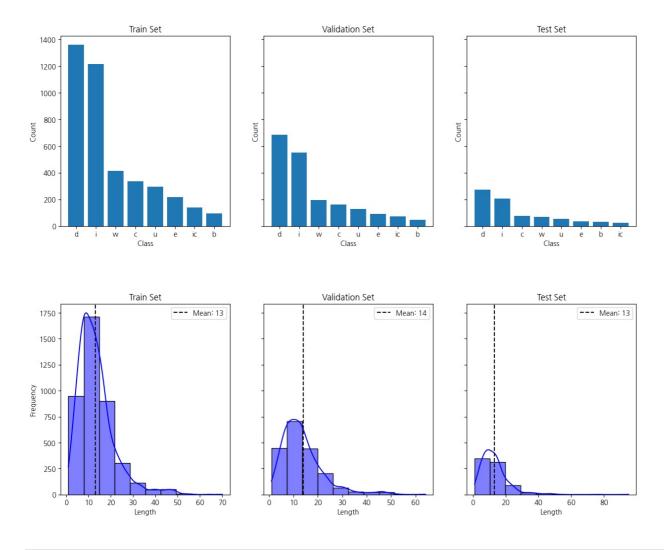
| class | text | |
|-------|--|--|
| 780 | 780 | |
| 8 | 755 | |
| d | (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). | |
| 274 | 4 | |

Info

| Non-Null Count | Null Count | Dtype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780 | 0 | category |
| 780 | 0 | object |

Visualizations

Class Distribution



| Dataset | Longest Sentence | Shortest Sentence | Mean Sentence Length | Sum of Sentences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Train | 70 | 1 | 13 | 4078 |
| Validation | 64 | 1 | 14 | 1935 |
| Test | 95 | 1 | 13 | 780 |

Word Cloud







통계 요약 코멘트:

- 답변:
- 총 문서 수: 4078
- 평균 문장 길이: 13 단어
- 주요 키워드: 피고인, 피해자, 범행, 당시, 사건

드리프트 관련 해석:

- 문서 수:
- 4078개의 문서가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 이 많은 양의 데이터는 분석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크기로 보이며, 데이터의 전

반적인 분포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- 평균 문장 길이:
- 문장의 평균 길이는 13단어입니다. 이 값은 데이터셋 내 텍스트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데, 이는 특정 주제나 사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.
- 그러나 데이터의 분포 변화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문장 길이와 같은 단순한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. 키워드 빈도나 단어 사용과 같이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합니다.
- 주요 키워드:
- 데이터셋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몇 가지 키워드로 피고인, 피해자, 범행, 당시, 사건 등이 있습니다. 이 키워드들은 범죄 법정 기록을 다루고 있음을 나타내며, 데이터 분석에 있어 관련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. 그러나 이러한 키워드들이 데이터의 분포 변화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.
- 주제별 분석:
- 데이터셋 내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세분화하는 것은 데이터 분포 변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다양한 유형의 범죄(강도, 절도 등)를 분석하거나 사건의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데이터의 변화 패턴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